

검정대상 농업기계 (제3조의2제1항 관련)

1. 종합검정

- 가. 농업용 트랙터
- 나. 농업용 트랙터 보호구조물(ROPS)
- 다. 콤바인
- 라. 이앙기
- 마. 정식기
- 바. 농업용 난방기(가스식은 제외)
- 사. 농산물건조기
- 아. 농산물저온저장고
- 자. 가정용 도정기
- 차. 농업용 동력운반차(승용형)
- 카. 농업용 로더(loader, 올리개) [자체중량 2톤 미만의 동력전달 차축을 가진 승용자주식 전용형 작업기계(차체굴절식 조향장치가 있는 자체중량 4톤 미만의 타이어식 로더를 포함한다)]
- 타. 농업용 굴착기(전용형, 자체중량 1톤 미만)
- 파. 관리기(승용형)
- 하. 비료살포기(승용자주형)
- 거. 농업용 베일러(baler, 볏짚 묶는 기계) (승용자주형)
- 너. 동력수확기[자주형 또는 농업용 트랙터 부착형(농업용 트랙터 부착형 굴취전용 땅속작물수확기는 제외한다)]
- 더. 동력파종기(승용자주형, 농업용 트랙터 부착형 또는 전용형 벼직파기를 포함한다)
- 러. 경운기
- 머. 스피드스프레이어
- 버. 주행형 동력분무기(승용자주형)
- 서. 원거리용 방제기
- 어.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농업기계

2. 안전검정

- 가. 농업용 동력운반차(보행형)
- 나. 곡물건조기
- 다. 농업용 고소작업차(과수용 작업대를 포함한다)
- 라. 주행형 동력분무기(보행자주행 및 부착형)
- 마. 농업용 파쇄기
- 바. 농업용 톱밥제조기
- 사. 비료살포기(승용자주행은 제외한다)
- 아. 농산물세척기
- 자. 예취기
- 차. 동력제초기[모우어(mower, 잔디깎는 기계)를 포함한다]
- 카. 농업용 리프트
- 타. 트레일러(농업용 트랙터 및 경운기용)
- 파. 농업용 베일러(승용자주행은 제외한다)
- 하. 농업용 절단기
- 거. 베일피복기
- 너. 관리기(보행형)
- 더. 스피드스프레이어(자주행은 제외한다)
- 러. 사료배합기
- 머. 사료공급기(사료급이기)
- 버. 농산물제피기(農産物除皮機)(공기식은 제외한다)
- 서. 탈곡기(주행형)
- 어. 동력수확기(농업용 트랙터 부착형 굴취전용 땅속작물수확기로 한정한다)
- 저.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농업기계